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53 호

2002 년 5 월 15 일 수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2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3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4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5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1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6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7호(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회
입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8호(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2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9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2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0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6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59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
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1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0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34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26호(2002년도예산고시(제1회추가경정예산))----- 4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 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37'을 "649"로 하고, 동조 제3호 총계의 정원 "655"를 "66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사유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여 일일이 『찾아 가는 복지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복지 수요 팽창에 따른 복지행정의 인적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행정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제15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 관리코자 함.

○ 주요골자

- 집행기관의 정원 "637"을 "649"로 조정
(안 제2조제1호)
- 남동구의 총 정원 "655"을 "667"로 조정
(안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중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안이유
- 2000. 3. 2. 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청구 주민수(500명)를 높게 정함으로 인해 운영실적이 미흡함.
 - 이에 따라, 기존의 감사청구인수를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인수(300명)”를 고려하여 200명 내외로 할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해 옴.
- 주요골자
-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법 제13조의 4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의 자로서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제2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4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공단의 운영이 부실한 때에는 이사장 해임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구의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보궐임원의 임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에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 구의 부구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에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제16조(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구에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단의 신규 설립에 따른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9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임·직원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만료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22조(이사장후보 추천)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며 이사장 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9조 제1호에 해당되거나 공단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2.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관리·운영사업
3. 청사시설 관리·운영사업
4. 만수수영장 관리·운영사업

제24조(대행사업 및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5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6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7조(예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공단 이사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감 독

- 제29조(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수당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 제3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②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 제33조(기타법령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 부터 당해 연도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행정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자주성, 효율성, 안정성, 수익성을 제고코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인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골자

-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구가 전액 출자한다. (안 제4조)
-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8조)
-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안 제13조)
- 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관리, 만수수영장 관리, 기타 구청장이 위탁 승인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안 제23조)
-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안 제2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청소년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동부교육청교육장, 남동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의원, 교육자, 청소년

단체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보호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재임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청소년지도위원

제9(구성)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한정치산자
2. 금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4.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제12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의 부조·지원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증표교부)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되고 있는 지방청 소년위원회운영조례 및 청소년지도 위원에관한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위원회
 - 제2조(구성) 15인 이내(당연직, 위촉직 구분)
 - 당연직위원 : 위원장(구청장), 동부교육청교육장, 남동경찰서장
 - 제4조(임기)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3년, 연임가능)
 -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
 - 제9조(구성) 동별 10인 이내
 - 제13조(임기) 3년(연임가능)
 - 제14조(협의회 구성)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가능
- *****

[별 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15조 관련)

(앞면)	(단위 : cm)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 동	0.3 0.75 0.75 1 0.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5 × 7.5	4.9×7.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3cm×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6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에서 공제 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연도 휴직기간}}{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제22조 제1항 제6호중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의”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 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 2 제1항)
 - 휴가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 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아래 산출방식)토록함
(안 제20조제2항)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2001.6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2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7호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일반 액수의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 위촉위원 대부분이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전문분야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이 원활하게 결산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촉기간 중 검사위원에 대한 지급 일비를 현실화 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결산 위원회 일비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세의”를 “따라 지방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법령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안에 거주하는 나환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세 과세면제를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에 대한 과세면제로 개정 함.(안 제3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8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5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한다.

제17조 내지 제18조를 삭제 한다.

제28조 제2항중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으로 하고,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생활보호담당으로 한다”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단서 조항으로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담당,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보호담당이 기금출납원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기금이 각기 다른 별개의 기금처럼 이원화하여 운용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기금의 통제와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합기금조례와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제4조의4호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제17조, 제18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임으로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출납원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제4조의4호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제17조, 제18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함.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6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 내지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중“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을 신설하고 제④항중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하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청색, 공공용봉투는 녹색으로 하며”로 한다.

제11조 제④항중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본칙을 제①항으로하고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안이유 **
**

-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 수단이 미흡하여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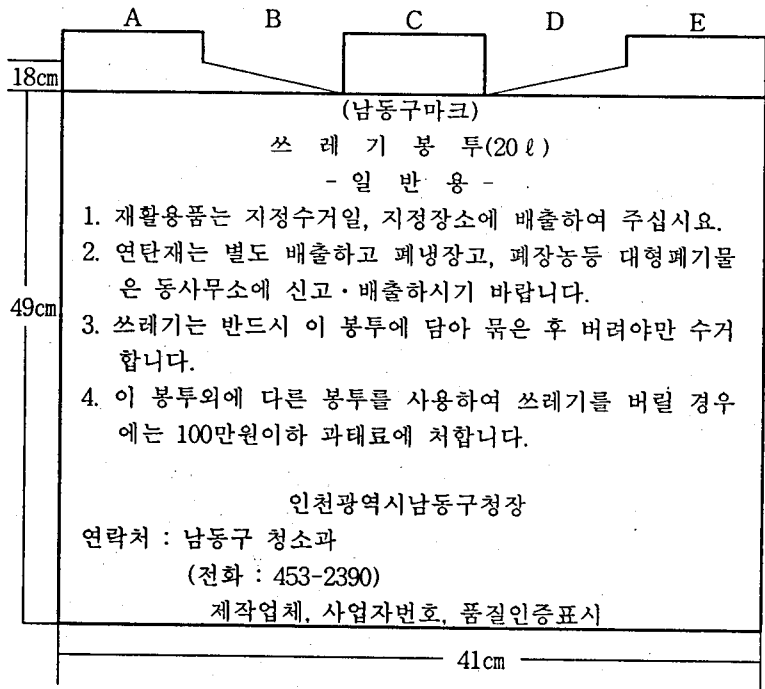
** ○ 주요골자 **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 처리 (청결유지)
 - 청결유지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청결유지 명령조치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기타 청결유지에 따른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 폐기물봉투의 사양중 일반용 봉투는 흰색,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청색,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로 한다.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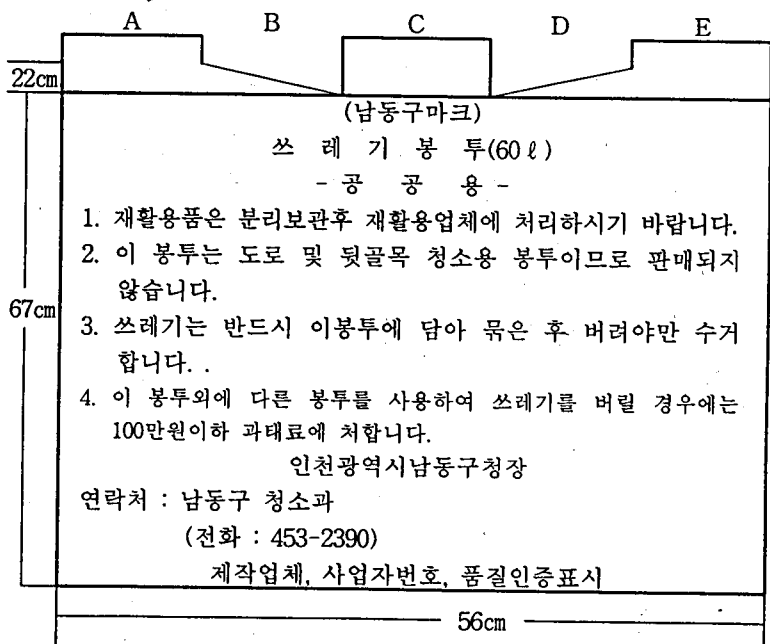
〈별표 5〉

봉 투 모 형 도

- 일반용봉투(20ℓ 예시)
(묶는 부분)



- 공공용봉투(50ℓ 예시)
(묶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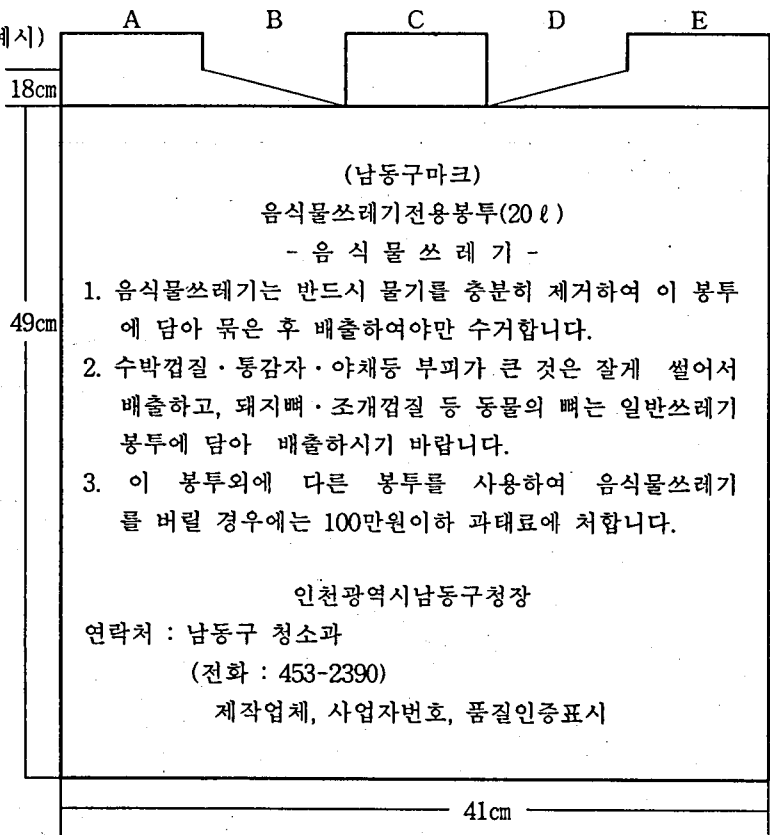


< 신 설 >

봉 투 모 형 도

○ 음식물쓰레기봉투(20ℓ 예시)

(묶는 부분)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5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인 경우”를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 경우”로 한다.

제5조(추천 및 선발) 제2호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장학금지급의 정지) 제1항중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조례16조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동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자 또는 본인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대상 범위가 학년석차 100분의 20이내인 경우로 되어있어 신청자가 저조하여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2조제1항중 “학업성적이 재적인원의 100분의 20이내인 경우”를 “재적인원의 100분의 30이내인 경우”로 개정하고자 함.
- 제8조제3호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5. 1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6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회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장은 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회의원(부의장, 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사회단체 대표, 대학교수등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회의원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위원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의원 또는 관련자에게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활동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수당)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출국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회규칙)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내부규정의 하나인 의회의원 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안 제4조)
-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위원회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인 천				
		인 천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x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내외로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자료의 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년월·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
(제 목)

○○년 ○월
(월까지만 표시)

남동구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국:
2. 여행목적:
3. 여행기간:
4. 보고서작성자: 소속위원회,성명
5. 여행자인적사항(2인이상일 경우)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26호

2002년도예산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4월 27일 제102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2002년도 제1회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5.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02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	
합 계	162,287,445	154,241,110	8,046,335	5.3	
일 반 회 계	133,652,481	127,581,367	6,071,114	4.8	
특 별 회 계	28,634,964	26,659,743	1,975,221	7.5	
의료보호기금	2,672,021	720,800	1,951,221	270.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517,802	1,517,802	0	0	
주 차 장	5,844,000	5,820,000	24,000	0.5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828,287	2,828,287	0	0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7,942,644	7,942,644	0	0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130,210	3,130,210	0	0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4,700,000	4,700,000	0	0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중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33,652,481	100	127,581,367	100	6,071,114	4.8
세입	지방세수입	19,376,241	14.5	19,376,241	15.2	0	0
	세외수입	30,846,193	23.1	27,238,700	21.4	3,607,493	13.3
	경상적세외수입	14,586,446	10.9	14,550,953	11.4	35,493	0.3
	임시적세외수입	16,259,747	12.2	12,687,747	9.9	3,572,000	28.2
	지방교부세	10,000	0.1	0	0.0	10,000	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
	조정교부금	34,072,033	25.5	32,402,033	25.4	1,670,000	5.2
	보조금	49,348,014	36.9	48,564,393	38.1	783,621	1.7
	국고보조금	31,685,153	23.7	31,237,947	24.5	447,206	1.5
	시·도비보조금	17,662,861	13.2	17,326,446	13.6	336,415	2.0
세출	경상예산	44,751,969	33.5	43,877,148	34.4	874,821	2.0
	인건비	23,982,457	17.9	23,718,956	18.6	263,501	1.2
	경상적경비	20,769,512	15.5	20,158,192	15.8	611,320	3.1
	사업예산	82,681,431	61.9	76,884,610	60.3	5,796,821	7.6
	보조사업	61,992,614	46.4	60,585,579	47.5	1,407,035	2.4
	자체사업	20,688,817	15.5	16,299,031	12.8	4,389,786	27.0
	채무상환	460,206	0.3	460,206	0.4	0	0
	지방채상환	460,206	0.3	460,206	0.4	0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
	예비비등	5,758,875	4.3	6,359,403	5.0	△600,528	△9.4
	예비비	1,068,178	0.8	1,968,706	1.5	△900,528	△45.7
	기타	4,690,697	3.5	4,390,697	3.4	300,000	6.9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33,652,481	100	127,581,367	100	6,071,114	4.8
성 질 별	인 건 비	24,002,476	18.0	23,738,975	18.6	263,501	1.1
	물 건 비	15,639,387	11.7	14,992,964	11.8	646,423	4.3
	이 전 경 비	42,214,884	31.6	41,446,529	32.5	768,355	1.9
	자 본 지 출	47,102,939	35.2	42,109,576	33.0	4,993,363	11.9
	용 자 및 출 자	300,000	0.2	0	0	300,000	0
	보 전 재 원	404,800	0.3	404,800	0.3	0	0
	내 부 거 래	1,169,817	0.9	1,169,817	0.9	0	0
	예비비 및 기타	2,818,178	2.1	3,718,706	2.9	△900,528	△24.2
기 능 별	일 반 행 정	36,293,966	27.2	35,323,409	27.7	970,557	2.7
	사 회 개 발	85,964,565	64.3	81,702,785	64.0	4,261,780	5.2
	경 제 개 발	6,744,141	5.1	5,084,761	4.0	1,659,380	32.6
	민 방 위 비	461,425	0.3	381,500	0.3	79,925	21.0
	지원및기타경비	4,188,384	3.1	5,088,912	4.0	△900,528	△17.7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8,634,964	100	26,659,743	100	1,975,221	7.5
세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
	세외수입	23,557,943	82.3	23,557,943	88.4	0	0
	경상적세외수입	12,855,409	44.9	12,855,409	48.2	0	0
	임시적세외수입	10,702,534	37.4	10,702,534	40.1	0	0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
	보조금	5,077,021	17.7	3,101,800	11.6	1,975,221	63.7
	국고보조금	1,560,977	5.5	0	0.0	1,560,977	0
	시. 도비보조금	3,516,044	12.3	3,101,800	11.6	414,244	13.4
세출	경상예산	447,549	1.6	430,689	1.6	16,860	4.0
	인건비	60,461	0.2	60,461	0.2	0	0
	경상적경비	387,088	1.4	370,228	1.4	16,860	4.6
	사업예산	21,118,728	73.8	17,957,683	67.4	3,161,045	17.7
	보조사업	3,163,289	11.0	701,800	2.6	2,461,489	350.8
	자체사업	17,955,439	62.7	17,255,883	64.7	699,556	4.1
	채무상환	1,741,500	6.1	1,741,500	6.5	0	0
	지방채상환	1,741,500	6.1	1,741,500	6.5	0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
	예비비등	5,327,187	18.6	6,529,871	24.5	△1,202,684	△18.4
	예비비	5,308,187	18.5	6,510,871	24.4	△1,202,684	△18.4
	기타	19,000	0.1	19,000	0.1	0	0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8,634,964	100	26,659,743	100	1,975,221	7.5
성 질 별	인 건 비	60,461	0.2	60,461	0.2	0	0
	물 건 비	271,528	0.9	254,668	1.0	16,860	6.6
	이 전 경 비	2,768,581	9.7	817,360	3.1	1,951,221	238.7
	자 본 지 출	16,948,888	59.2	15,739,064	59.0	1,209,824	7.7
	용 자 및 출 자	1,516,819	5.3	1,516,819	5.7	0	0
	보 전 재 원	1,741,500	6.1	1,741,500	6.5	0	0
	예비비 및 기타	5,327,187	18.6	6,529,871	24.5	△1,202,684	△18.4
기 능 별	일 반 행 정	0	0.0	0	0.0	0	0
	사 회 개 발	17,939,585	62.6	15,162,756	56.9	2,776,829	18.3
	경 제 개 발	3,626,692	12.7	3,225,616	12.1	401,076	12.4
	민 방 위 비	0	0.0	0	0.0	0	0
	지원및기타경비	7,068,687	24.7	8,271,371	31.0	△1,202,684	△14.5

